

공 고

사천시 공인 조례 제6조(공인의 등록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동 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12일

사 천 시



1. 사용개시일 : 2017. 9. 12.
2. 등록 사유 : 재난관리포털 내 『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』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발급 등 민원 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
3. 전자이미지공인 내역

구분	공 인 명	서체 및 규격(cm)	인 영	비고
전자이미지 공인	사천시장의인	훈민정음 해례본체 (3.0×3.0)		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